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518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을 허용하여 다수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20347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서는 영양사와 조리사를 별도로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지방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해 그간 지방자치단체장이 식중독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던 것을 ‘통보’하도록 변경하는 등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20438호, 2024.

9. 20. 공포, 2025. 3. 21. 시행)됨에 따라 하위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 전화 : 043-719-2014, 팩스 : 043-719-2000

전자 우편 : silverxjung@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조리사·영양사를 별도로 두지 아니할 수 있는 집단급식소의 규모) 법 제51조제1항제3호 및 법 제52조제1항제3호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는 “1회 300명 이하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제93조제2항 중 “보고 및”을 “통보 및”으로, “보고는”을 “제출은”으로 한다.

별지 제66호서식 중 “보고”를 “통보”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보고기관명”을 “통보기관명”으로 하며, 같은 서식 중 “보고일자”를 “통보일자”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보고자”를 “통보자”로 하며, 같은 서식 중 “보고합니다”를 “통보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67호서식 앞쪽 중 “조사결과 보고서”를 “조사결과서”로 하고, 같은 앞쪽 중 “보고기관명”을 “제출기관명”으로 하며, 같은 앞쪽 중 “보고일”을 “제출일”로 하고, 같은 앞쪽 중 “보고자”를 “제출자”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중 “보고합니다”를 “제출합니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3조, 별지 제66호서식
및 별지 제6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93조(식중독환자 또는 그 사체에 관한 보고) ① (생 략) ②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이 하는 식중독 발생 <u>보고</u> 및 식중독 조사결과 <u>보고</u>는 각각 별지 제66호서식 및 별지 제67호서식에 따른다.	<u>제79조의2(조리사·영양사를 별도로 두지 아니할 수 있는 집단급식소의 규모) 법 제51조제1항제3호 및 법 제52조제1항제3호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는 “1회 300명 이하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를 말한다.</u> 제93조(식중독환자 또는 그 사체에 관한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u>통보</u> 및 ----- <u>제출</u>은 --- ----- -----.